서울고등법원 2025년 7월 선고 중요 판결·결정[1)]

민 사

2021나2051264 유류분반환

[제24민사부 2025. 1. 9. 선고] <민사일반> 확정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피상속인, 수탁자를 피고의 배우자, 위탁자 생전 수익자를 피상속인, 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유언대용신탁 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수탁자인 피고의 배우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위탁자 사후 수익자인 피고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인지, 피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특별수익인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고의 배우자에게 신탁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인증여 내지 유증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은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함 (원고일부승)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실질적으로 사인증여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망인의 사망 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이에 따른 법률관계도 실질적으로 민법 제562조에서 정한 사인증여 등과 유사함.
 ② 피고가 위탁자 사후 수익자의 수익권으로써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부동산 그 자체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만으로 그 체결 시점에 수탁자인 피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③ 유언대용신탁의 본질이 상속 또는 재산승계와 동일하다면 여기에도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상 자연스러움

1) 일부 이전 판결·결정을 포함하고, 민사, 가사, 행정, 형사의 사건분류 가나다순.

2024나2043677 보험금

[제19-3민사부 2025. 5. 21. 선고] <민사일반> 확정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1,292,637,5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A회사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 시까지 정산된 공사대금은 420,900,000원이었음
- 원고는 A회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지가 A회사에 도달하기 전 하수급업체에 208,027,997원을 직불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반환 선금 871,737,500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선급금에서 당연 공제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578,768,636원만을 지급함

□ 쟁점

-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
- 선급금 보증보험에 있어 선급금에서 당연공제되는 공사대금의 범위

□ 판단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반환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기 전이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선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의무를 피고가 보증한 경우에 보증사고 발생 후부터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반환할 선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원고패)

2024나2037931 부당이득반환 등

[제19-3민사부 2025. 7. 16. 선고] <민사일반> 확정

□ 사안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도로(이 사건 도로) 공사 진행 중 원고(한국전력공사)가 관리 중인 전주(이 사건 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대한민국)은 그 이설공사 비용부담주체에 관하여 다투던 중 우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추후 소송 등에 따라 비용부담주체가 확정되는 즉시 부담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가 도로법 제90조 제3항에 정한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도로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도로관리청이 부과한 부관을 상급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한 경우에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도로공사는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비로소 대두된 것으로서 그 편익이 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도로공사는 타공사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도로법 제91조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산업단지 조성사업(타공사)가 이 사건 도로공사 실시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이 사건 도로공사는 타공사로 인하여 시행되었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동두천시장은 이 사건 제1 전주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하였음
- 상급도로관리청이라고 하여도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권한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한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동두천시장의 상급도로관리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주의 점용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원용할 수 없음 (원고일부승)

2024나2056383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제19-3민사부 2025. 7. 23. 선고] <민사일반> 미확정

□ 사안 개요

- A회사는 피고(시공사),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인 대주들과 복합시설 신축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권 양수인은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이 사건 조항)
- 대주들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A회사에 306억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하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A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 A회사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시행권을 피고 등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행각서(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는 이행각서를 근거로 A회사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들은 A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채권자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함

□ 쟁점

-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A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패)

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까지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중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사업시행권의 양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권 양수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모두 살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② 피고는 대위변제로 민법 제481조에 따라 대주의 권리(우선수익권 및 기타 담보권 포함) 일체를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A회사에 사업시행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이나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한 언급이 없음

③ A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A회사에 구상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A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피고의 책임을 지나치게 무겁게 하는 것으로 변제자 대위 제도의 취지에 반함

행 정

2024누596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8-2행정부 2025. 7. 11. 선고] <조세> 상고심 계속 중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8년 당시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부회장으로 취임한 A에게 연봉 및 성과급으로 대표이사의 7배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음
- 피고는 A에게 지급된 보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초과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함

□ 쟁점

- 이 사건 초과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실질이 상여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 판단

-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사업연도에 A에게 지급한 초과급여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봄이 타당함

① A가 받은 보수는 원고의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14%를 넘는 규모로, 다른 법인이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와 영업이익 비율의 평균보다 훨씬 크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보수를 지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임

② A는 원고의 최대주주이고, 전체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의 부회장직도 겸하였는바 그 계열사 중 하나인 원고 내에서 스스로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③ A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액의 2배에 달하는 보수를 수령하여 다른 임원들과의 격차가 현저한바, 원고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대표이사와도 차등적인 기준이 설정될 특별한 이유가 없음

④ A가 취임한 이후 원고의 실적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A의 전체 그룹에 대한 지배관계를 고려하면 원고의 법인소득을 감소시켜서라도 지배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인 A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원고패)